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가유산수리 목적, 기본원칙 등 재규정 〉
■ 운영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202호)

2026. 9.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국가유산수리 목적, 기본원칙 등 재규정(안 제1조 등)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운영석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6. 6. 11.

다. 회 부 일 : 2026.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5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시행되면서 국가유산 보호의 기본이념이 ‘원형유지’에서 ‘국가유산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고 향유하며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확장되었음.

한편, 국가유산수리의 원칙 또한 ‘원형보존’에서 ‘국가유산의 가치 유지 및 회복’으로 확장되고 발전되었으나, 현행 법률은 여전히 ‘원형보존’에 한정되어 국가유산수리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국가유산기본법」의 취지와 변화된 국가유산 정책 방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목적 규정과 국가유산수리 등의 기본원칙, 수리 관련 규정을 「국가유산기본법」의 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국가유산수리의 목적을 ‘국가유산의 가치 유지 및 회복’으로 재설정하고, 국가유산의 유형적·무형적 가치보존을 중심으로 수리 원칙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3조, 제6조, 제33조의2, 제37조제2항).

Ⅲ. 검토의견

1. 국가유산수리 목적, 기본원칙 등 재규정(안 제1조 등)

개정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맞춰 국가유산의 목적 및 기본 원칙 등을 재규정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u>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계승하기</u>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실측설계·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국가유산의 가치 유지 및 회복을</u> ----- ----- ----- ----- -----.
제3조(국가유산수리등의 기본원칙) 국가유산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국가유산수리등”이라 한다)는 국가유산의 <u>원형보존에</u>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수리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과 그 주변 경관이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조(국가유산수리등의 기본원칙) --- ----- ----- ----- <u>유형적·무형적 가치보존에</u> ----- ----- ----- -----.
제6조(성실의무) 국가유산수리등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 3. (생략)	제6조(성실의무) ----- ----- ----- 1. ~ 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가유산의 원형을 보존하고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3조의2(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 ① · ② (생략)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설계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였을 것 2. · 3. (생략) ④ ~ ⑥ (생략) 제37조(국가유산수리 현장의 점검 등) ① (생략)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이 원형대로 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 2. (생략)	4. ----- ----- ----<u>가치 유지 및 회복과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향상</u>----- ----- ----- ----- 제33조의2(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u>가치 유지 및 회복에</u>----- ----- -- 2. · 3.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7조(국가유산수리 현장의 점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국가유산수리등의 기본원칙에 따라</u>----- ----- ----- -----. 1. · 2. (현행과 같음)

현행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산수리법」”이라 함)은 목적과 기본원칙을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원형보존’으로 명시하면서 이와 연계되는 성실의무, 설계승인 심사기준, 현장점검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5월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과 함께 「문화재보호법」 제3조¹⁾에서 규정한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인 원형유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7조제1호²⁾에서 국가유산보호 정책의 기본원칙을 “유형적·무형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승할 것”으로 새로 규정함에 따라 국가유산 가치중심의 보존 원칙과 상이한 수리 목적, 원칙으로 국가유산 가치의 창조적 계승·발전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가유산 체계에 따른 보호 원칙과 합치하는 국가유산수리 목적, 기본원칙 등의 정립으로, 수리 계획·실행에서의 혼선 발생 방지 및 국가유산 가치의 온전한 보존·전승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다만 현행 「국가유산수리법」상 기본원칙 등을 원형보존에서 가치유지 및 회복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바, 현행 국가유산체계의 기본법이 되는 「국가유산기본법」에서는 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기본원칙을 유

1) 「문화재보호법」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2) 「국가유산기본법」

제7조(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에 관한 보호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의 유형적·무형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승할 것

형적·무형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승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문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국가유산의 유형적·무형적 가치보존을 추구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아울러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정연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8754)이 문화체육관광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과 함께 시행된 「국가유산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국가유산 보존·관리·활용 등의 기본이념과 국가유산수리 목적에 부합하도록 국가유산수리의 목적, 기본원칙 등을 재설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유산 가치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조치로 판단하며, 다만 가장 원칙적 방향인 국가유산수리의 목적 외에 보다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기본원칙, 성실의무, 설계승인 원칙에서도 ‘가치유지 및 회복’을 사용하고 있어, 이를 더 구체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80